인천광역시 검단구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

2026년 9월 21일
자치경제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 및 발의자: 2026년 9월 21일, 검단구청장
나. 회 부 일 자: 2026년 9월 3일 위원회 회부
다. 상 정 일 자: 제3회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 임시회
제4차 자치경제위원회(2026. 9. 21.) 상정,
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 · 답변, 토론, 의결

2. 제안설명 요지

【제안 설명자: 기획예산실장】

1) 제안이유

○ 「지방재정법」 제37조의3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설치하는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기능을 다른 위원회가 대신하는 경우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어, 기존 「인천광역시 검단구 투자심사위원회 운영 규칙」을 폐지하고 조례로 제정하고자 함

2) 주요골자

○ 개정 근거
- 「지방재정법」 제27조의 6, 제37조, 제37조의 3

○ 주요 내용: 검단구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목적(제1조)
검단구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설치 및 기능(제2조 및 제3조)

위원회 회의 및 의결에 관한 사항(제4조)

심의안건의 사전 배부에 관한 사항(제5조)

○ 입법예고(2026. 8. 5. ~ 2026. 8. 20.) 결과: 특이사항 없음

○ 성별영향평가, 부패영향평가 등 원안동의

3. 사무과장(직무대리) 검토보고 요지

【사무과장(직무대리) : 정홍선】

❍ 본 조례안은 「지방재정법」 제37조의3에 따라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, 기존 「인천광역시 검단구 투자심사위원회 운영 규칙」을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, 조례 제정의 법적 근거와 필요성이 인정됨

❍ 「지방재정법」 제37조의3제1항은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고 그 위원회 위원이 지방재정 또는 투자심사에 관한 학식이나 전문성을 갖춘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위원회가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

❍ 이에 따라 「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설치되는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를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는 위원회로 활용하는 것은 법령상 가능하며, 별도의 위원회를 중복 설치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행정의 효율성 측면에서도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

❍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,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근거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 및 법적 타당성은 인정되나, 자구 수정이 필요한 부분은 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 후 결정할 사안이라 사료됨

4. 질의 및 답변 요지

○ 특이 사항 없음.

5. 토론 요지 : '수정의결' 동의

6. 심사 결과 : 【수정 가결】

인천광역시 검단구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운영 조례안(수정안)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재정법」 제37조의3에 따라 인천광역시 검단구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설치 등)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은 「지방재정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제37조의3제1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검단구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제3조(기능) ① 위원회의 기능은 「인천광역시 검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에 따른 인천광역시 검단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다.

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자문한다.

1. 법 제27조의6제1항에 따른 지방재정영향평가
2. 법 제37조제1항에 관한 사항
3. 그 밖에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

제4조(회의 등)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.

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③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한 때에 심의안건, 발언내용, 회의결과 등을 회의록으로 작성·관리해야 한다.

제5조(안건배부)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위원에게 송부해야 한다. 다만,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규칙의 폐지) 「인천광역시 검단구 투자심사위원회 운영 규칙」 은 폐지한다

인천광역시 검단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2026년 9월 21일

자치경제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 및 발의자: 2026년 9월 21일, 검단구청장

나. 회 부 일 자: 2026년 9월 3일 위원회 회부

다. 상 정 일 자: 제3회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 임시회
제4차 자치경제위원회(2026. 9. 21.) 상정,
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 · 답변, 토론, 의결

2. 제안설명 요지

【제안 설명자: 기획예산실장】

1) 제안이유

○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운영 체계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.
위원 정원, 사전 교육 이수 규정, 연임 횟수 등을 조정하고 아울러 관련 위원회 및 회의의 간사를 담당팀장으로 명확히 규정하며, 지역회의에 주민자치회 비소속 위원 및 일반 주민 등도 참여할 수 있도록 주민참여의 개방성을 확보하고자 함.

○ 주민참여예산기구 간 역할을 명확히 하기 위해 운영위원회의 기능을 '결정'에서 '논의'로 변경하고, 민관협의회의 기능은 주요 사항에 대한 결정 기능으로 정비하고자 함.

2) 주요골자

○ 관계법령: 「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제13조

○ 주요내용: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정원을 100명 이내에서 50명 이내로 조정

함(제8조 제2항)

주민참여예산위원 위촉요건 중 주민참여예산 교육과정 사전 이수요건을 삭제함(제8조 제3항 제1호)

주민참여예산위원 위촉대상에 주민·사회·직능단체·기관·학계 등에서 추천을 받은 사람을 추가함(제8조 제3항 제2호)

기존 제8조 제3항 제3호를 삭제함

주민참여예산위원 연임 횟수를 2회에서 1회로 축소함(제9조 제2항)

주민참여예산위원회 및 민관협의회 간사를 주민참여예산 담당팀장으로 변경함(제10조 제2항, 제16조 제3항)

동 주민자치회가 지역회의 기능을 대신하는 경우 구청장과 협의하여 운영하도록 함(제13조 제3항)

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 간사를 동 주민생활지원 담당팀장으로 변경함(제13조 제4항)

주민참여예산위원회 운영위원회의 기능을 '결정'에서 '논의'로 변경함(제14조제1항)

민관협의회의 회의 개최 목적을 제15조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하기 위한 것으로 변경함(제18조 제1항)

○ 입법예고(2026. 8. 5. ~ 2026. 8. 25.) 결과: 특이사항 없음

○ 성별영향평가, 부패영향평가 등 원안동의

3. 사무과장(직무대리) 검토보고 요지

【사무과장(직무대리) : 정홍선】

❍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「지방재정법」 제3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주민참여예산기구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는 것으로, 전체적으로 상위법령의 범위에서 개정이 가능한 사항으로 판단됨.

❍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정원을 실제 운영 규모인 50명에 맞추고, 사전교육 이수요건을 삭제하여 참여장벽을 완화하며, 추천대상을 확대하는 사

항은 주민참여의 폭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타당성이 있음.

○ 또한 위원의 연임 횟수를 1회로 제한하는 것은 보다 다양한 주민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, 각 주민참여예산기구의 간사를 담당팀장으로 명확히 하는 사항 역시 행정적 책임성과 업무의 연속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.

○ 특히 안 제13조제3항의 개정은 동 주민자치회가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 기능을 대신하더라도 주민자치회에 소속되지 않은 주민참여예산위원 및 일반 주민 등의 참여가 가능하도록 운영의 개방성을 확보하려는 취지로서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실질적인 주민참여를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타당함

○ 따라서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등 관련규정에 위배됨이 없어 **“원안검토”** 하였음

4. 질의 및 답변 요지

○ 특이 사항 없음.

5. 토론 요지 : ‘원안의결’ 동의

6. 심사 결과 : 【원안 가결】